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6. 1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5.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20. 5. 26.
- 다. 상정일자: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0. 6. 1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가. 제안이유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개정 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2)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3)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안 제4조)

-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4)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안 제12조)

-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5)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안 제13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종의)

- 본 개정 규약 동의안은 2020.5.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로 제출되어 2020.5.26.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8.11.11. 제226회 정례회에서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규약 동의안 처리 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61개 단체였으나 현재 97개(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 참여, 중랑구 제외) 단체로 확대되었고 더불어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였음.
- 주요 개정 규약 동의안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기존 명칭에서 ‘한국위원회’를 삭제하여 주도적 추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인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명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장 지자체와 한국위원회의 공동사무국에서 협의회장 지자체만으로 사무국이 운영됨에 따라 공동사무국 조항을 폐지하도록 정하였음. 또한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지방자

치단체별 납부된 부담금의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약을 수정·삭제·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아울러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2019.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이후 아동친화도시 민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외 1개소와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및 서울시 아동친화 정책박람회와 아동정책참여위원회 모의의회 개최 및 시민참여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단체는 중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음(자료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0.6.기준).
- 향후에도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4대 기본권리¹²⁾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구가 아동친화도시로의 인증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과 46가지 세부항목을 지표¹³⁾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바, 본 규약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12)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기본원칙(10가지)	세부항목(46가지)
① 아동권리 전담부서	- 책임부서 또는 조정기구 존재 여부 등 3가지
②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조례, 지침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존중 여부 등 3가지
③ 아동의 참여체계	- 문제결정시 아동의 의견 반영 여부 등 7가지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비정부기구들과 적절한 협력 여부 등 4가지
⑤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전략여부 등 4가지
⑥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 예산을 아동에게 공평 배분 여부 등 3가지
⑦ 정기적 아동권리 현황 조사	- 아동에 대한 통계와 기타 정보 수집 여부 등 2가지
⑧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 여부 등 8가지
⑨ 아동영향평가	- 조례, 정책, 제안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 등 5가지
⑩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보육, 교육서비스 정책 수행 여부 등 7가지

○ 기타자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지자체 현황, 관계법령)

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단체 현황

지역	지 자 체 명
서울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부산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부산진구, 서구
인천 (4)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남동구
광주 (4)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대구 (3)	대구광역시, 중구, 달서구
대전 (3)	유성구, 대덕구, 서구
울산 (2)	울산광역시, 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7)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8)	금산군,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경기 (14)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광주시, 의왕시
강원 (4)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남 (5)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경북 (6)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경주시, 김천시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